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구, ○구, ○구, ○○군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 등”이라한다)의 의무사용 건설공사¹⁾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1)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2014.3.6. 기준)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1. 울산광역시 ○청(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가. 울산광역시 ○○○○본부

울산광역시 ○○○○본부는 아래 [표1]과 같이 “○○○산단~○○순환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 11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 분	사 업 명	공 사 위 치	사 업 량	착 공 일	준 공 (예 정) 일	비 고
1	도로	○○○산단~○○순환도로간 도로개설공사	○구 ○○동~○동(○○순환로) 일원	확장 L=1.06km, B=24→32m	2014.11.03	2017.10.02	
2	도로	○○○산단(산업단지~○○○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 ○○동~○○군 ○○면 ○○리, ○○리 일원	신설 L=2.68km, B=20m	2014.11.26	2017.12.10	
3	도로	울산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군 ○○면 ○○리, ○○리 일원	확장 L=1.1km, B=4.25~7.5m	2016.08.09	2018.08.08	
4	도로	○○로(○○교~○○시계) 확장공사	○구 ○○동 ○○교~○○시계	신설 L=4.63km, B=20→30m	2016.09.05	2019.09.04	
5	도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군 ○○면 ○○리, ○○리 일원	신설 L=1.47km, B=25m	2016.12.26	2018.12.25	
6	도로	○○~○○ 혼잡도로 개선공사	○구 ○○동 ○○○○○거리~○○삼거리	신설 L=3.46km, B=20m	2017.03.02	2021.02.28	
7	도로	○○천~○○IC간(중0-00) 도로확장공사(○○교~중0-000)	○구 ○○동 000-0번지 일원	확장 L=1.6km, B=20m	2015.03.23	2017.03.30	
8	도로	○○진입도로 확장공사	○구 ○○동 000-00번지 일원	확장 L=0.64km, B=7→25~30m	2016.10.17	2018.04.16	
9	도로	○○~○○간(○○,○○구간) 도로개설공사	○○군 ○○면 ○리 000번지 일원	신설 L=4.8km, B=20m	2016.12.01	2019.11.30	
10	도로	○○○순환도로 확장공사	○구 ○○동 000-0번지 일원	확장 L=1.0km, B=7~12→30m	2017.02.06	2018.04.05	
11	도로	○○아파트~대로0-00호간 도로개설공사	○구 ○동 000번지 일원	확장 L=0.7km, B=30m	2017.02.13	2018.05.12	

위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²⁾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울산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7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였으나,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한 “○○○산단~○○순환도로 간 개설공사” 등 3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

2) 2016. 5. 31 이후 발주기준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산단~○○순환로간 도로 개설공사	2014.11.03	2017.10.02	반영	반영	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2	○○○산단(산업단지~○○○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4.11.26	2017.12.10	반영	반영	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3	울산 ○○○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	2016.08.09	2018.08.08	반영	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4	산업로(○○교~○○시계) 확장 공사	2016.09.05	2019.09.04	반영	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5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2016.12.26	2018.12.25	반영	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6	○○~○○ 혼잡도로 개선공사	2017.03.02	2021.02.28	반영	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7	○○천~○○IC간(중0-00) 도로확장 공사(○○교~중0-000)	2015.3.23	2017.03.30	반영	반영	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8	○○진입도로 확장공사	2016.10.17	2018.04.16	반영	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9	○○~○○간(○○,○○ 구간) 도로개설공사	2016.12.01	2019.11.30	반영	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10	○○○순환도로 확장공사	2017.02.06	2018.04.05	반영	반영	제출	-	- (공사중)
11	○○아파트~대로0-00호간 도로 개설공사	2017.02.13	2018.05.12	반영	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 울산광역시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국 ○○○○과

울산광역시 ○○○○과는 아래 [표3]과 같이 “○○처리구역(0차 0공구) 지
선관로 부설공사” 등 11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3]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 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하수 관로	○○처리구역(0차 0공구) 지선관로 부설공사	○○구 ○○동 일원	하수관로 L=5.3km	2014.05.12	2017.01.09	
2	하수 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군 ○○읍 일원	재이용관로 L=1.8km	2014.08.06	2015.08.05	
3	하수 관로	○○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공사	○○구 ○○동 일원	하수관로 L=12km	2016.01.05	2018.07.05	
4	하수 관로	○○하수처리구역(○동,○○)지선 관로 부설공사(0공구)	○○군 ○○면 일원	하 수 관 로 L=12.8km	2016.04.15	2018.07.31	
5	하수 관로	○○하수처리구역(○동,○○)지선 관로 부설공사(0공구)	○○군 ○○면 일원	하 수 관 로 L=13.8km	2016.04.15	2018.07.31	
6	하수 관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군 ○○면 일원	방류관로 L=10.2km	2017.01.12	2020.01.11	
7	하수 관로	○○하수처리시설 0차처리 및 처 리수 재이용사업	○○군 ○○읍 일원	재이용관로 L=3.3km	2017.04.11	2019.10.10	
8	하수 관로	○○하수처리구역 ○○○펌프장 일 원 차집관로 정비사업	○○구 ○○동 일원	하 수 관 로 L=1.93km	2017.08.22	2019.08.21	
9	하수 관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0차)	○○군 ○○읍 일원	하수관로 L=3.1km	2015.12.21	2016.12.19	
10	하수 관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군 ○○읍 일원	하수관로 L=25km	2016.06.28	2018.08.27	
11	하수 관로	○○처리구역(국가산단) 하수관로 정비공사(0차)	○○군 ○○읍 일원	하 수 관 로 L=13.61km	2016.08.22	2019.04.18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4]와 같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건

설공사에 순환골재를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고, “○○하수처리구역 ○○○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2개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한 “○○처리구역(0차 0공구) 지선관로 부설공사” 등 6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개의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처리구역(0차 0공구) 지선관로 부설공사	2014.05.12	2017.01.09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2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014.08.06	2015.08.05	미반영	해당없음	-	-	위반 (준공)
3	○○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공사	2016.01.05	2018.07.05	반영	반영	제출	미신고 (준공전)	- (공사중)
4	○○하수처리구역(○동,○○)지선관로 부설공사(0공구)	2016.04.15	2018.07.31	반영	반영	제출	미신고 (준공전)	- (공사중)
5	○○하수처리구역(○동,○○)지선관로 부설공사(0공구)	2016.04.15	2018.07.31	반영	반영	제출	미신고 (준공전)	- (공사중)
6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17.01.12	2020.01.11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7	○○하수처리시설 0차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2017.04.11	2019.10.10	해당없음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8	○○하수처리구역 ○○○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	2017.08.22	2019.08.21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9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0차)	2015.12.21	2016.12.19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10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016.06.28	2018.08.27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11	○○처리구역(국가산단) 하수관로 정비공사(0차)	2016.08.22	2019.04.18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울산광역시 ○구(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가. ○구 ○○○○국 ○○○○과

○구 ○○○○과는 아래 [표5]와 같이 “○○전시장 제0공영주차장 조성” 등 6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5]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주차장	○○전시장 제0공영주차장 조성	○구 ○○동 00-0	1546㎡, 52면	2014.07.01	2014.09.28	
2	주차장	○○○○ ○○ 공영주차장 조성	○구 ○○동 000 번지 일원	7,399㎡, 301면	2014.12.29	2015.05.28	
3	주차장	○○도시내 공영주차장 조성	○구 ○○동 0000	1,599㎡, 46면	2015.8.20	2015.09.23	
4	주차장	2016년 ○○도시 공영주차장(11) 조성사업	○구 ○○동 0000	11면	2016.11.24	2016.12.21	
5	주차장	○○ 공영주차장 증축 조성	○구 ○○동 00-0 번지	3층4단 392면→ 5층6단(180면 증)	2016.08.29	2017.05.12	
6	주차장	○○○ ○문 공영주차장 조성	○구 ○동 00-0	1571㎡, 31면	2017.08.11	2017.11.27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 ○○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리고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한 “○○전시장 제0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4개의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6]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전시장 제0공영주차장 조성	2014.07.01	2014.09.28	반영	해당없음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2	○○○○ ○○ 공영주차장 조성	2014.12.29	2015.05.28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3	○○도시내 공영주차장 조성	2015.08.20	2015.09.23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4	2016년 ○○도시 공영주차장 (11) 조성사업	2016.11.24	2016.12.21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5	○○ 공영주차장 증축 조성	2016.08.29	2017.05.1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6	○○○ ○문 공영주차장 조성	2017.08.11	2017.11.27	반영	미반영	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3. 울산광역시 ○구(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가. ○구 ○○○○국 ○○○○과

○구 ○○○○과는 아래 [표7]과 같이 “○○○○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등 3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7]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주차장	○○○○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구 ○동 0000-0	3,851㎡/지하2층/ 주차면 107면	2016.6.30	2017.12.31	
2	주차장	○○동 공영주차장 및 ○○○○ 지원센터 신축공사	○구 ○동 0000-0	지상3~6층, 주차면 145면	2017.10.31	2018.10.30	
3	주차장	○○○○○동(○○산업부지) 공 영주차장 조성사업	○구 ○동 000-0	주차면 98면	2017.09.05	2017.11.03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8]과 같이 “○○○○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등 3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2개의 건설공사는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8]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2016.06.30	2017.12.31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	○○동 공영주차장 및 ○○○○ 지원센터 신축공사	2017.10.31	2018.10.30	미반영	해당없음	-	-	위반 (공사중)
3	○○○○○동(○○산업부지) 공 영주차장 조성사업	2017.09.05	2017.11.03	해당없음	미반영	-	-	위반 (준공)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4. 울산광역시 ○구(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가. ○구 ○○○○국 ○○○○과

○구 ○○○○과는 아래 [표9]와 같이 “○○○○ 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설 공사를 발주하였다.

[표9]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주차장	○○○○ 주차장 조성공사	○구 ○○동 000-0번지	주차면수:33면 아스콘포장:1,189.7㎡	2015.02.02	2015.05.02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0]과 같이 “○○○○ 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10]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 주차장 조성공사	2015.02.02	2015.05.0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나. ○구 ○○○○국 ○○과

○구 ○○과는 아래 [표11]과 같이 “○○○○○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1]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하수 관로	○○○○○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	○○○○○ 일원	하수관로부설 918m 등	2015.06.29	2015.11.10	
2	하수 관로	○○○○○ 일원 노후하수관 정 비공사	○○○○○ 일원	하수관로부설 772m 등	2016.05.25	2016.10.12	
3	하수 관로	○○○○○○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 일원	하수관로부설 452m 등	2017.05.19	2017.08.18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는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리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한 “○○○○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등 3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1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015.06.29	2015.11.10	해당없음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2	○○○○○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2016.05.25	2016.10.12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3	○○○○○○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2017.05.19	2017.08.18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다. ○구 ○○○○국 ○○○○과

○구 ○○○○과는 아래 [표13]과 같이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3]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주차장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동 000-0	노외주차장 조성 87 면	2015.03.16	2015.09.16	
2	주차장	○○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동 산000-0	주차장 조성 2,040 ㎡ (70면)	2017.06.27	2017.11.23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4]와 같이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는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리고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한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1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5.03.16	2015.09.16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2	○○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7.06.27	2017.11.23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라. ○구 ○○○○국 ○○○○과

○구 ○○○○과는 아래 [표15]과 같이 “○○○○구 0단계 도로개설공사”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5]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일반 도로	○○○○구 0단계 도로 개설공사	○구 ○○동 000 번지 일원	중1-186호선:B=20.0m,L=200.m 소1-41호선:B=10.0m,L=132.0m	2015.08. 05	2016.2.4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6]과 같이 “○○○○구 0단계 도로개설공사”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16]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구 0단계 도로개설공사	2015.08.05	2016.02.04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5. 울산광역시 ○구(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가. ○구 ○○○○국 ○○과

○구 ○○과는 아래 [표17]과 같이 “○○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등 2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7]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도로	○○ ○○○○○○ 진입 도로 개설	○○동 000-000 번지 일원	도로확장L=1.7km, B=3m→10m	2016.07.15	2018.07.14	
2	도로	○○ ○○○호수공원 진 입도로 확장	○○동 000-0 번지 일원	도로확장L=1.8km, B=3m→10m	2016.06.24	2018.06.23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³⁾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3) 2016. 5. 31 이후 발주기준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8]과 같이 “○○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는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한 “○○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등 2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18]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2016.07.15	2018.07.14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2	○○ ○○○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2016.06.24	2018.06.23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나. ○구 ○○○○국 ○○○○과

○구 ○○○○과는 아래 [표19]와 같이 “○○○○단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7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9]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 고
1	주차장	○○○○단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동 000-0	주차면 44면 A=1,036㎡	2014.09.11	2015.02.23	
2	주차장	○○산림욕장 임시주차장 부지 조 성공사	○○동 000-000	주차면 100면	2014.12.04	2015.02.05	
3	주차장	○○동 000-0일원 유희부지 주차 장조성공사	○○동 000-0	A=477㎡ 주차면 9면	2015.04.03	2015.05.17	
4	주차장	○○동 000-0번지 일원 유희부지 주차장 조성공사	○○동 000-0	A=240.8㎡ 주차면 6면	2016.04.19	2016.05.13	
5	주차장	○○동 0000-0번지 외 1개소 유희 부지 주차장 조성공사	○○동 0000-0 ○○동 000-0	A=599㎡ 주차면 30면	2016.05.12	2016.06.06	
6	주차장	○○산림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동 000-0	A=3,669㎡ 주차장 70면	2016.10.24	2017.03.22	
7	주차장	○○0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동 000-0	포켓주차장조성 21면	2017.11.17	2017.12.16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0]과 같이 “○○산림욕장 임시주차장 부지 조성공사” 등 5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 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0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 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리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한 “○○○○단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20]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단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4.09.11	2015.02.23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2	○○산림욕장 임시주차장 부지 조성공사	2014.12.04	2015.02.05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3	○○동 000-0일원 유희부지 주차장조성공사	2015.04.03	2015.05.17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4	○○동 000-0번지 일원 유희부지 주차장 조성공사	2016.04.19	2016.05.13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5	○○동 0000-0번지 외 1개소 유희부지 주차장 조성공사	2016.05.12	2016.06.06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6	○○산림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16.10.24	2017.03.2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7	○○0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17.11.17	2017.12.16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6. 울산광역시 ○○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가. ○○군 ○○○○국 ○○과

○○군 ○○과는 아래 [표21]과 같이 “○○농어촌도로 000호(○○선) 확포장공사” 등 12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21]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도로	○○농어촌도로101호(○○ 선) 확포장공사	○○읍 ○○리 산00-0번지 일원	도로개설 L=1.92km,B=8.0m	2014.04.11	2016.12.09	
2	도로	○○농어촌도로210호(○○ 선) 확포장공사	상북면 지내리 일원	도로확.포장 L=1,227m,B=9.0m	2014.05.23	2015.07.03	
3	도로	○○천상~○○마을연결도 로 개설공사	○○읍 ○○리 일원	도로개설 L=2.53km,B=8~10m	2015.01.30	2018.03.31	
4	도로	○○군도7호선(○○필~○ ○필) 개설공사	○○면 ○○리 일원	도로개설 L=2.1km,B=8m	2015.07.31	2018.03.31	
5	도로	○○농어촌도로000호(○○ 선) 확포장공사	○○면 ○○리 0000번지 일원	도로개설 L=1.4km,B=8m	2016.02.22	2017.08.31	
6	도로	○○농어촌도로000호(○○ 선) 확포장공사	○○면 ○○○리 00 번지 일원	도로개설 L=1,000m,B=8m	2016.06.20	2017.05.15	
7	도로	○○군도00호선 (○○리) 선형개량공사	○○면 ○○리 산000-0번지 일원	도로개설 L=1,000m,B=9m	2016.06.28	2018.06.30	
8	도로	○○농어촌도로000호(교가 선) 확포장공사	○○면 ○○리 ○○○ ○아파트 일원	도로확장 L=400.0m,B=10m	2016.09.29	2017.05.30	
9	도로	○○○상~○○간 도로개설공사	○○읍 ○○리, ○리 일원	도로개설 L=1.2Km,B=10m	2016.10.04	2019.06.19	
10	도로	○○군도0호선(○○~○ 리) 확포장공사	○○면 ○○리 000 번지 일원	도로개설 L=1.4km,B=8.0m	2017.01.03	2018.03.31	
11	도로	○○농어촌도로000호(○○ 선) 확포장공사	○○면 ○○리 산000-0번지 일원	도로확포장 L=865m,B=6~11m	2017.03.14	2017.11.30	
12	도로	○○군도00호선선형개량공 사(○리~○○)	○○면 일원 (○○온천인근)	도로개설 L=2,164m,B=8m	2017.05.08	2019.05.22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⁴⁾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4) 2016. 5. 31 이후 발주기준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2]와 같이 “○○농어촌도로 000호(○○선) 확포장공사”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 군도0호 선(○○○~○○○)개설공사”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를, “○○농어촌도로 000호(교가선)확포장공사” 등 4개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한 “○○농어촌도로 000호(○○선) 확포장공사” 등 11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5개의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2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농어촌도로000호 (○○선) 확포장공사	2014.04.11	2016.12.0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	○○농어촌도로000호 (○○선) 확포장공사	2014.05.23	2015.07.03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3	○○천상~○○마을	2015.01.30	2018.03.31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연결도로 개설공사						(준공전)	(공사중)
4	○○군도7호선(○○필~○○필) 개설공사	2015.07.31	2018.03.31	미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5	○○농어촌도로000호(○○선) 확포장공사	2016.02.22	2017.08.31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6	○○농어촌도로3000(○○선) 확포장공사	2016.06.20	2017.05.15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7	○○군도00호선(○○리) 선형개량공사	2016.06.28	2018.06.30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8	○○농어촌도로000호(○○선) 확포장공사	2016.09.29	2017.05.30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9	○○○상~○○간 도로개설공사	2016.10.04	2019.06.19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10	○○군도0호선(○○~○○)확포장공사	2017.01.03	2018.03.31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11	○○농어촌도로000호(○○선)확포장공사	2017.03.14	2017.11.30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12	○○군도33호선선형개량공사(○○~○○)	2017.05.08	2019.05.22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군 도시환경국 도시과

○○군 도시과는 아래 [표23]과 같이 “농어촌도로 000호(○○선) 확포장공사(추가분)” 등 2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23]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000호(○○선) 확포장공사(추가분)	○○읍 ○○리 000번지 일원	L=1.156km, B=2.5~3m	2014.12.30	2015.06.12	
2	일반도로	○○ ○○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면 ○리 000-00번지 일원	L=2.64km, B=3→10m	2017.06.27	2019.12.13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⁵⁾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

5) 2016. 5. 31 이후 발주기준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4]와 같이 “농어촌도로 000호(○○선) 확포장공사(추가분)” 등 2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는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준공한 1개의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2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농어촌도로 000호(○○선) 확포장공사(추가분)	2014.12.30	2015.06.12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2	○○ ○○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17.06.27	2019.12.13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다. ○○군 건설교통국 안전건설과

○○군 안전건설과 아래 [표25]와 같이 “○○ ○○마을 공공하수도시설” 등 8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25]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 고
1	하수 관로	○○ ○○마을 공공하수도시설	○○ ○○마을	하수관거 5.1km	2014.04.17	2015.02.10	
2	하수 관로	○○ ○○,○○ 일원 공공 하수도시설	○○ ○○, ○○ 일원	하수관로 L=13.4km	2014.06.03	2017.03.20	
3	하수 관로	○○ ○○○○ 일원 공공하 수도시설	○○ ○○○○ 일원	하수관로 7.634km	2015.05.06	2015.11.30	
4	하수 관로	○○면 ○○리일원 공공하수도시설설치사업	○○면 ○○리 일원	하수관로 9.3km	2013.08.12	2015.07.31	
5	하수 관로	○○ ○○○ 공공 하수도 설치공사	○○읍 ○○, ○○, ○○, ○ ○, ○○마을 일원	하수관로 L=18km	2016.06.02	2018.06.01	
6	하수 관로	○○ ○○○○○ 공공하수도설치공사	○○읍 ○○○○○마을 일원	하수관로 L=7.6km	2016.06.07	2018.06.06	
7	하수 관로	○○ ○○○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읍 ○○리 ○○○마을 일원	하수관로 L=1.55km	2017.04.06	2017.08.21	
8	하수 처리 시설	○○ ○○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면 ○○리 일원	하수처리장 290㎡/일, L=9.2km	2017.11.23	2019.05.24	

※ 울산광역시 울준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6]과 같이 “○○ ○○마을 공공하수도시설” 등 2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는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리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한 8개의 건설공사 중 “○○ ○○마을 공공하수도시설” 등 6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5개의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26]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마을 공공하수도시설	2014.04.17	2015.02.10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2	○○ ○○.○○ 일원 공공하수도시설	2014.06.03	2017.03.20	반영	반영	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3	○○ ○○○○ 일원 공공하수도시설	2015.05.06	2015.11.30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4	○○면 ○○리일원 공공하수도시설설치사업	2013.08.12	2015.07.31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5	○○ ○○○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2016.06.02	2018.06.01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6	○○ ○○○○○ 공공하수도설 치공사	2016.06.07	2018.06.06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7	○○ ○○○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2017.04.06	2017.08.21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8	○○ ○○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017.11.23	2019.05.24	반영	반영	제출	미신고 (준공전)	(공사중)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라. ○○군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군 ○○○○과는 아래 [표27]과 같이 “○○ ○○보금자리주택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5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27]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 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주차장	○○ ○○보금자리주택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면○리 000-0 번지 일원	주차면 31면	2014.12.02	2015.01.30	
2	주차장	○○○○ ○○강소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읍 ○○리 000-0번지	주차면 23면	2015.09.14	2015.12.12	
3	주차장	○○ 1,2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건축)	○○읍 ○○리 0000번지	주차면 131면	2017.03.20	2017.11.17	
4	주차장	○○ 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읍 ○○리 00-0번지	주차면 44면	2017.08.24	2018.02.28	
5	주차장	○○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읍 ○○리 0000-0번지	주차면 252면	2017.11.29	2018.06.06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8]과 같이 “○○ ○○보금자리주택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고, “○○ 1,2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건축)” 등 2개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

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1개의 건설공사는 준공하였다.

그리고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한 “○○ 1,2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건축)”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28]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보금자리주택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4.12.02	2015.01.30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	○○○○ ○○○소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5.09.14	2015.12.1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3	○○ 1,2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 사(건축)	2017.03.20	2017.11.17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4	○○ 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7.08.24	2018.02.28	반영	반영	제출	미신고 (준공전)	- (공사중)
5	○○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7.11.29	2018.06.06	반영	미반영	제출	미신고 (준공전)	위반 (공사중)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마. ○○군 건설교통국 창조시설과

○○군 ○○○○과는 아래 [표29]와 같이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3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29]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 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주차장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2015 년도 시행분)	○○읍 ○○리 73번지	주차면 629면	2015.10.12	2017.04.13	
2	주차장	○○ ○○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 면 ○ ○ 리 000-003번지	주차면 201면	2015.05.04	2016.07.29	
3	주차장	○○ ○○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면 ○○리 000-0번지	주차면 123면	2015.07.23	2016.07.11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대상 건설공사이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30]과 같이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3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 ○○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리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한 3개의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30]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2010 년도 시행분)	2015.10.12	2017.04.13	반영	반영	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2	○○ ○○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15.05.04	2016.07.29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3	○○ ○○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15.07.23	2016.07.11	반영	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7. 울산광역시 ○○○○국(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업무 소홀)

가. 울산광역시 ○○○○과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의 통보와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위임하였다.

울산광역시 ○○○○국 ○○○○과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로부터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을 미준수하고 사용계획서의 미제출 및 사용 실적을 미보고한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31]과 같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등을 위반한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1]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

구분	대상(위반) 건설공사	설계 미반영(미사용)	사용계획서 미제출	사용실적 미보고	비고
○○○○본부	3(3) 8(7)	0 0	0 7	3 -	준공 준공 전
○○○○국 ○○○○과	3(3) 8(5)	1 2	2 4	2 -	준공 준공 전
본 청 소 계	6(6) 16(12)	1 2	2 11	5 -	준공 준공 전
중구 ○○○○과	6(6) 0(0)	5 0	3 0	4 -	준공 준공 전
중 구 소 계	6(6) 0(0)	5 0	3 0	4 -	준공 준공 전
남구 ○○○○과	2(2) 1(1)	2 1	0 0	0 -	준공 준공 전
남 구 소 계	2(2) 1(1)	2 1	0 0	0 -	준공 준공 전
동구 ○○○○과	1(1) 0(0)	1 0	0 0	0 -	준공 준공 전
동구 ○○과	3(3) 0(0)	1 0	3 0	3 -	준공 준공 전
동구 ○○○○과	2(2) 0(0)	2 -	2 -	2 -	준공 준공 전
동구 ○○○○과	1(1) 0(0)	1 -	1 -	1 -	준공 준공 전
동 구 소 계	7(7) 0(0)	6 0	6 0	6 -	준공 준공 전
북구 ○○과	0(0) 2(2)	0 1	0 2	0 -	준공 준공 전
북구 ○○○○과	7(7) 0(0)	6 0	2 0	2 -	준공 준공 전
북 구 소 계	7(7) 2(2)	6 1	2 2	2 -	준공 준공 전
○○군 ○○과	6(6) 6(6)	3 3	5 6	5 -	준공 준공 전

구분	대상(위반) 건설공사	설계 미반영(미사용)	사용계획서 미제출	사용실적 미보고	비고
○○군 ○○과	1(1) 1(1)	1 1	1 1	1 -	준공 준공 전
○○군 ○○○○과	5(5) 3(2)	2 0	4 2	5 -	준공 준공 전
○○군 ○○○○과	3(3) 2(1)	3 1	1 -	1 -	준공 준공 전
○○군 ○○○○과	3(3) 0(0)	0 0	2 0	3 -	준공 준공 전
○○군 소 계	18(18) 12(10)	9 5	13 9	15 -	준공 준공 전
합 계	46(46) 31(25)	29 9	26 22	32 -	준공 준공 전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군수는

- [시정] ① 건설공사가 준공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사업) 발주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하고,
- ②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사업)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사용계획서의 제출 및 사용실적 보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 ③ 건설공사(사업) 발주부서와 환경관련 부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